

「2025년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민간시장 중심의 판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5년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소셜벤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 확보 권고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 제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으며 향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사업 신청 시, 모든 심사결과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고유권한임에 동의하며 심사과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⑤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참여조직(사회적경제조직)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www.gsic.or.kr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별 적합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마케팅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소셜벤처 연계·육성을 통해 민간시장 중심의 판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Social vendor)의 개념>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민간시장 진출을 위하여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익성을 지닌 조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5. 10. 31.(금)
- (추진절차) ※ 하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셜벤처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3개사)	선정심사·최종선정	협약 체결·사업수행
'25. 5. 26.(월)~6.9.(월)	①서류적격검토 ~'25. 6. 10.(화)	①협약체결 '25. 6. 17(화)-6 30(월)
누리집 신청(접수)	②대면심사 '25. 6. 16.(월)	②사업수행 '25. 7 참여조직 선정 이후
③선정발표 '25. 6. 17(화)		
결과보고서 제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참여조직 모집 및 선정
2025. 10월 말	2025. 7.~10월 말	2025. 7월초 예정
참여조직·운영기관 간 매칭을 통한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추진	참여조직 선정* 및 협약

* 참여조직(12개사)은 수행기업(3개사)에서 통합공고로 선정 예정

- (선정규모) 소셜벤처 3개사
- (사업예산) 총 60,000,000원(금육천만원) 내외
- (지원내용) 1개 기업당 20,000,000원 예산 규모 편성

□ 모집대상

○ (모집규모) 총 3개사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개선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마케팅 및 유통 연계 등 판로 지원 역량을 갖춘 소셜벤처 역할이 가능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행기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유통·브랜딩 등 지원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우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유사사업 실적 보유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유통채널을 운영 중이거나, 다수 판로처 연계가 가능한 수행기업
- 온·오프라인 판로 진입 전략 수립·운영이 가능한 수행기업

○ (주요과업)

- 참여조직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각 4개사)
-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및 실행 지원
(참여조직당 2회이상)
- 참여조직의 사회적가치 전달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전략 설계
- 판로, 마케팅, 유통, 브랜딩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실행 자문
- 사회적경제조직 판촉홍보 행사개최(1회이상)
- 판로유형별(온·오프라인) 판로 실행지원 및 성과 관리(월별제출)
- 수행기업 간 네트워킹 개최시, 참여 필수 등

○ (운영지원범위 예시)

핵심 지원분야	※2025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 운영※	
	온라인 판로지원 (콘텐츠·플랫폼 중심)	오프라인 판로지원 (현장·유통채널 중심)
수행기업-참여조직 진단 및 추진 전략 수립	초기·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개발 및 판로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소셜벤처(수행기업) 사전진단, <u>*참여조직별 실행예산 조정</u> *수행기업(1개사)기준 참여조직(4개사) 관리 및 지원	

소셜 벤더 운영 지원	①콘텐츠 및 브랜딩 기획	▶ 상세페이지 구조 및 스토리 기획 ▶ SNS 콘텐츠(디자인) 방향 수립 및 온라인제품 브랜딩	▶ POP, 패키지, 리플렛 등 실물 홍보물 기획 ▶ 체험 콘텐츠 및 진열 전략 수립 및 오프라인 중심 브랜딩
	② 마케팅 실행전략	▶ 해시태그·키워드 기반 SNS 확산 전략 ▶ 리뷰단·체험단 마케팅 기획 ▶ 소액 광고·리타겟팅 컨설팅	▶ 플리마켓, 오프라인 행사 참여 전략 ▶ 시식·체험 중심 홍보 기획 ▶ 제품 고객 응대 콘텐츠 및 홍보물 배치 자문
	③제품개선	▶ 소비자 관점 제품 이미지 보완 ▶ 상세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 패키지/상품 구성 리디자인 ▶ 사용 활용도 높은 제품구성
	④콘텐츠·홍보물 제작	▶ 상세페이지·SNS 콘텐츠 연계 ▶ 촬영·광고 콘텐츠 제작	▶ POP, 패키지, 전단 등 실물 제작 ▶ 행사 콘텐츠·부스 제작
	⑤운영매뉴얼 및 피드백설계	▶ 콘텐츠 업로드 주기 및 운영 매뉴얼 ▶ 리뷰·댓글 관리 방법 안내	▶ 오프라인 소비자 피드백 수집·개선안 정리
	⑥유통·채널 연계 (공통적용)	▶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쇼핑 등 입점 전략 ▶ 입점 제안서 작성, 플랫폼 등록지원 ▶ 라이브커머스, 체험단 연계 등	▶ 로컬 매장, 편집숍, 마켓 입점전략 ▶ 입점 상담 매칭, 샘플 준비 ▶ 오프라인 행사 연계 기획
후속지원연계		기타 25년 경기도 소셜벤더 육성지원사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등	

□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2025. 5. 26.(월)~6. 9.(월) 17:00까지

※ 기한 초과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폐쇄되므로 시간에 유의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gsic.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 신청은 누리집 회원만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필수제출 여부	제출방법
1	[서식1]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1부	필수제출	[온라인 제출] 1~10번 서류를 각각 저장한 뒤 알집으로 묶어 제출 ▼ ‘1. 신청서식’ 탭에 첨부
2	[서식2]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운영기관 계획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서식4] 기업의 범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5	[서식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7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9	관련 유사사업 수행 실적 내역 1부		
10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1부 *최근 2년 이내(23~24년) 측정자료여야 함	해당 시 제출	‘2. 발표자료’ 탭에 첨부
11	[자유양식] 운영계획 발표자료(PDF) 1부 *발표시간(10분 내외) 고려하여 작성 *발표구성 - 소셜벤처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유 역량, 판로처 여부 등 -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제품 진단 및 판로(온오프라인)개선 계획 등	필수제출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선정절차

○ (선정절차) 요건검토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최종선정기업의 3배수(9개소) 초과 접수 시 서면심사 실시

절차	내 용
↓	
1차 요건검토	- (심사대상) 지원기관 전체 - (심사내용) 지원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검토(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	
2차 대면심사	- (심사일정) 2025. 6. 16.(월) 14:00~ (예정) - (심사대상) 자격 지원기관 전체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 (발표방식) 제안 PT발표(질의응답시간포함) 15분 ※ 대면심사는 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진행하고, 심사일정 등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 (선정기준) 대면심사 평균 70점 이상 지원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선발 기업의 1배수 선정 - (심사장소) 합격 지원기관 대상 추후 개별 안내
↓	
선정결과발표	- (발표일정) 2025. 6. 17.(화) 결과발표 예정 -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공문통지)

□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세부내용
사업 수행역량 (유사 사업 경험, 실행력 등)	30	①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② 전문성 및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지속가능한 판로처 및 연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이해도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20	①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② 진단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단계별 구성이 적절한가? ③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① 사업목표와 계획이 적정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는가? ② 계획을 통해 해당기간 내 핵심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달성 가능한가? ③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도민체감사업 및 목표타당성	20	① 운영 목표 타당성(정성적 목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② 소셜벤처육성지원사업 운영자원을 통해 도민의 사회적경제 제품 접근성이 개선되는가?

□ 평가 진행

- 최종 결정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평가 제외대상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이미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최종 선정 후 위반사실 확인 시 보조금 반환·사업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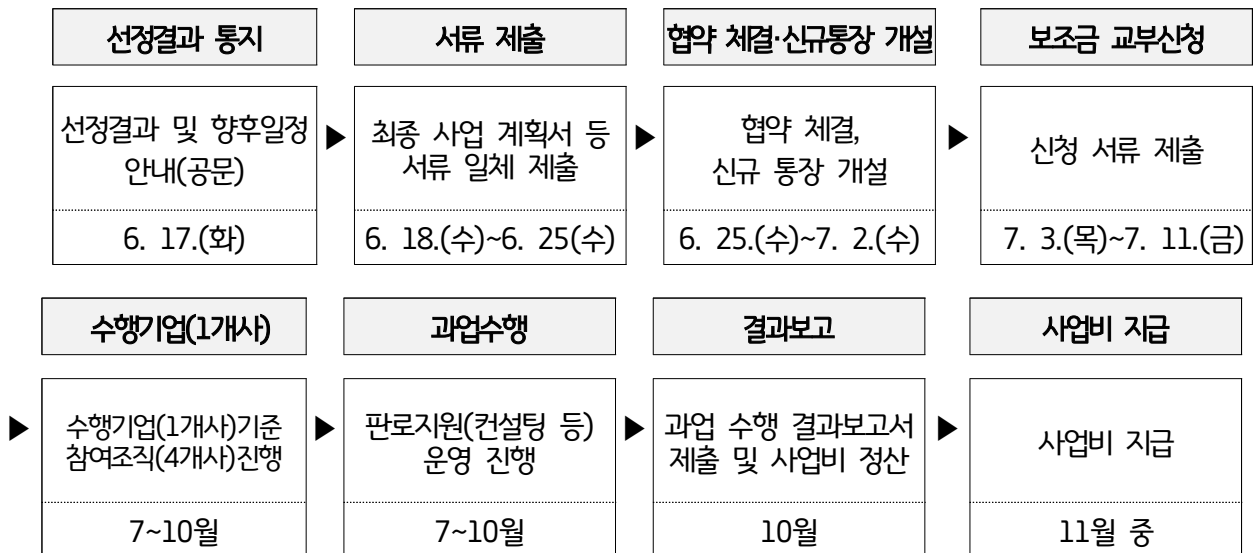
□ 사업비

- (사업비 지원액) 수행기업 1개사 당 20,000천원* 지원(3개사)

* 수행기업 1개사 당 참여조직(4개사)

□ 사업비 지급절차

- (지급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조금 지급 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며 보조금 신청 전 필수로 우리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기존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활용 가능
- 법인수익금 계좌와 별도로 전용 보조금 계좌를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하던 통장 사용 시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신청 서류) 공문,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및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정산관련사항)

- 과업 미 수행 시 사업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을 중간에 폐지한 경우에도 15일 이내 정산보고를 실시
- 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받은 후, 반드시 교부한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판단한 다음 최종 정산보고를 검수해야 사업이 완료됨.

□ 사업예산 편성방법

- 20백만원(1개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 가능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 도비 100%
직접사업비 (70%)	• 제품개선(특화상품 발굴 및 개선), 상품활성화(기존 특화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홍보 등 사업 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편성 • 품질개선비(*총사업비 30%이상), 품평판촉비(*총사업비 40%이상) 로 구성
간접사업비 (30%)	• 소셜벤처 사업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총사업비 20%이내) • 상품기획품평회등 및 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등

○ 세부예산분류

-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예산 분류로 사업비가 지급 됨

비목	세목	내용	정산서류
직 접 사 업 비	품질 개선	상품 개선비 -성분 함유량 개선, 패키지 디자인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시제품(샘플) 제작 등 상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상품개선 외의 제품 패키지 양산, 상품 물류비 등 수혜기업의 운영 제반비용 성격의 금액 지원 불가 · 상품 개선을 디자인 전문인력(내부)이 수행하였을 경우, 개선과업 내 상품개선비(세목)내에 인건비증빙기준으로 산정(*총사업비 15%이내)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상품개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사진 등 *내부인력이 수행하는 경우 디자인 과업관련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3년이내)
	품평 판촉	소모 품비 (행사) 행사용 비품 등 소모성 재료 - 현수막, 간판, 매대, 스토어 설치 등 행사용품 - 제품(샘플 등) 구입 및 제작, 포장용품, 부분물품 등 *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물품 등 구입은 정산 불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증빙사진 등

간 접 사 업 비		임차료	행사장, 교육장, 회의실 등 장소 임차 - 장소, 건물, 물류시설 등 일시 임차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 - 물품 운송, 하역, 상하차 등을 위한 차량 임차 - 기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임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홍보 및 마케팅비	상품 안내서, 상품 기술서, 상세 페이지,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 온라인 쇼핑몰 제작, 이용 등에 관련한 비용 - 프로모션(쿠폰, 경품, 사은품, 문자·메일링, 어플리케이션 제작, 제작발표회, 인터뷰 등)	
		일반 용역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등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 단, 일반용역비 지출 시 본원(경사원)과 사전협의 필수	
	인건비	인건비	투입인력에 대한 기본급여, 수당 및 , 보조인력, 기간제 인력, 아르바이트 인력 등에 대한 보수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참여인력현황표, -개인별 계좌 이체내역으로 증빙
		자문 수당	상품 기획, 발굴(품평회), 기획, 개선 등과 관련하여 초빙하는 외부전문가, 컨설턴트, (예상)고객 등 외부 인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위촉·참석·회의·자문수당 등) - 1회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급 - 수당 관련 사업수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투입인력(또는내부인력), 소속기관 임직원수당지급불가	-지출결의서, -수당지급명세서 (회의명,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등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운 영 경 비	사무 용품비	-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재료 - 문구류, 잉크, 복사용지 등 *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 한 물품 등 구입은 정산 불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서등
		업무 추진비	25년 경기도소셜벤처 육성지원 투입인력의 국내출장경비 등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지출영수증 등

비고1)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본원(경사원)과 사전협의하지 않은 부분은 정산불가

비고2) 각종 수수료(이체 입금 수수료, 서류발급, 공과금 등)와 이행보증보험료 등은 지출불가

비고3)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비고4) 최종 선정 수행기업 대상 회계처리기준 별도 교육예정

비고5) 수행기업별 참여조직(4개사) 선정심사 준비관련 예산배분(간접비) 필수(총사업비기준 10%이내)

□ 지원불가 항목 및 유의사항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등
- 지원금 집행은 사업수행계획(최종 승인)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달 10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 사업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금액은 환수하며,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 통장으로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에 의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불가함
-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행기관 자부담으로 집행
- 해당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편성 및 지출 불가함.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무관한 물품구입 등) 및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항목은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또는 불인정함
- 그밖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사업추진 시 보고사항

구분	시기	내용
사업계획 (수정)	(최종사업계획) 협약체결 전~ 6. 25(월) 이내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최종사업계획서 (사진포함)
	(사업계획 수정) 변경 시 (예:수행기업별 참여조직원 과업조정시)	추진일정, 계획, 예산변동 등
결과보고 (최종)	2025. 10. 31.(금)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운영지원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성과 등
그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 이 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요청하는 사업점검에 필요한 기타 사항

□ 문의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이강준 주임

- ☎031-258-3274 / kjlee@gsic.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시 유의사항

- ①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출 등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②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아래와 같은 조치 예정
 - 보조금 반환 · 사업 선정 취소 (사업부서/수탁기관)
 - 3년 이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 적용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체결한 협약서·보조금 관리 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을 및 보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⑤ 「2025년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의 품평회 등, 다수 온·오프라인 행사시에 보고자료 제출 등에 빠짐없이 성실히 임해야 함
- ⑥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및 환수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⑧ 지원사업 참여 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나, 약정체결일 전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보전 방식 불가
-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⑩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타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중복참여 불가
 -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①2025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②2025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선정기업 등)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며 그 외, 지원시 사전문의바람.
- ⑪ 사업부진,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기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별첨 「2025년 경기도 소셜벤처 육성지원」 수행기업 신청 서식 1부. 끝.